2020 경기공방학교 경기메이커프로젝트 신청서

□ 신청자 정보

프로젝트명					메이커 분야		
대표자 성명	ㅁ남 ㅁ여		생년월일				
성별				이메일			
직업					휴대폰		
주민등록주소지							
참여형태	개인 ㅁ/ 팀 ㅁ						
	성명	소속		역할	연락처	email	
팀원							
(팀일 경우)							
	년/	/월		Ę	ㅏ 프로젝트 지원사	업 참여이력등 기계	Ч
지원사업 참여이력	ex. 2019/05 지원사업명 : ex. 2019 메이커 프로젝트 피 지원내역 : ex. '프로젝트 지원' / 프로젝트						
(최근 3년 내)	지원사업명 : 지원내역 :						
가산점	가산점 `18,`19 경기공방학교 참여 여부						해당시 체크
.160			10, 10	100	— U T		

□ 신청구분 ※ 지원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변동가능

구분	로	지원금 (천원)	선택 🗆 (V 표시)
경기	A그룹	5,000	
메이커 프로젝트	B그룹	3,000	
그노 ¬ㅡ 지원	C그룹	2,000	

^{*} 필요에 따라 양식을 변형해서 사용하세요

□ 세부 참가계획 ※7페이지 이내 작성

○ 프로젝트 사업계획

프로젝트 계획 개요						
프로젝트 목표						
	비목	세목	산 출근 거(부가세 제외)	금액(원) 지원금		
	인건비	내부인건비	예) ※ 근로 직원의 월 급여 및 4대 보험료 성명×직위×참여기간×참여율 = 금액			
		외부인건비	예) ※ 성명×직위×참여기간×참여율 = 금액			
프로젝트 예산	직접비 (60%이상)	제품개발비	예) 제품제작비: 400,000 × 1개 예) 외주용역비 ※ 프리랜서 용역비 및 원천징수 (사업소득자 4.4% 기타소득자 3.3%에 한함) - 품목명: 단가×수량=0천원 - 시금형제작 외주용역(OO제품플라스틱금형제작)			
		재료비	예) 샘플몰드제작(석고금형) : 250,000 × 4P × 1개예) 상품의 나무 손잡이개발 : 10,000 × 10개× 2회예)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임대료(사업기간내)			
	※ 자금의 필요성, 금액의 작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계획 등을 기재 ※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며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, 정산서류 작성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 ※ 전체사업비 중 직접비 합계가 60% 이상이 되도록 사업비 산정 권장					
기대효과						

○ 프로젝트 발전가능성

기존 제품대비 우수성/차별성	
결과물의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	

○ 프로젝트 추진역량

대표자 및 팀원의 프로젝트 관련 주요경력 (최대한 자세히)	*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력만 요약하여 서술							
경력증명	* 경력증명(사진 등)에 대한 간단한 설명 기재							
기타업적								
(아이템 연관된	* 상품 제목, 크기, 제작년도							
업적만 기재,	* 상품 설명 기재							
사진 가능)								
	*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추진일정 등을 도표를 활용	하여 기	l재	기간	(월)			
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	세부 제작·개발 1. 예)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. 예)설계도면 작성 3. 예)장비 설치 4. 예)제작 실행 및 구성 5. 예)제품 중간점검 6. 예)제품 완성	6	7	8	9	10	11	비고

○ 융복합 및 내용

제품 및 서비스의 융복합 필요성	
융복합 연계를 통한 참신성 및 난이도 제시	

○ 조직구성

역할	이름	생년월일	전문분야/주요경력
대표			
(공동대표)			(산업디자인)
(팀원)			(목공)

○ 기타사항

수행기관	담당 제품개발 내용	제품개발 비중(%)
주관기관		
참여기관	* 해당없을 경우 공란처리	
외주용역처리	* 해당없을 경우 공란처리	
총 계		100%

확 약 서

본인은 (재)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추진하는 r2020년 경기공방학교」에 과제수행계획서(사업신청서)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약합니다.

- o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수행계획서(사업신청서)에 포함된 본 과제는 공고 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.
- o 제출된 과제수행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, 허위로 밝혀질 경우 향후 (재)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.
- o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, 진흥원과 기 체결한 협약서 상의 제반조건을 위배 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 시 진흥 원의 처리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.

2020년 월 일

프로젝트 팀명 :

대 표: (인)

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

<첨부2>

2020 경기공방학교 '경기 메이커 프로젝트' 저작권 규정

	2020 경기 6 경구표 경기 메이기 프로크트 지국은 ㅠ 6
	기 간 : 협약기간 및 완료 후 일정기간
	유의사항/기타
가.	신청과제에 대한 저작권은 지원자(혹은 컨소시엄)에게 있으며,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공공목적의 홍보 등을 위해 수상작의 소개를 위해 출판물 및 웹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(이용동의)
나.	향후,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지원과제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지원자(혹은 컨소시엄)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다.	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자(혹은 컨소시엄)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라.	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,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마.	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제출된 모든 지원과제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.
바.	지원자(혹은 컨소시엄)은 제출과제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원자에 있다.
	대표자 : (서명/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 (주관기관)

(새)경기콘텐츠진흥원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'경기공방학교 경기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'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 제1 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, 제33조, 제3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1.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

■ 수집·이용 목적

- 사업참여 : '2020년 경기공방학교 경기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' 사업 신청자 관리 등 관련 업무
- 사업홍보 : 지원사업 안내 및 만족도 조사, 자료발송 등 사업 홍보

■ 개인정보의 수집항목

- 기본정보 : 성명, 소속, 생년월일, 지원아이디어, 주소, e메일, 홈페이지, 전화, 휴대폰, 홈페이지ID

■ 보유 및 이용 기간 : 3년

- 위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 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- 단, 사업 종료일 후에는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 니다.

■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신 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- 제공받는 자 :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, 사업 운영 용역 수행기관, 정부부처 및 기관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 - '경기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' 사업을 위한 신청자격 검토, 평가, 선정 후 원활한 사업 수행
 - 중복 수상 검토, 제제사항 해당 여부 확인

■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
- 기본정보 : 성명, 소속, 생년월일, 지원아이디어, 주소, e메일, 홈페이지, 전화, 휴대폰, 홈페이지D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

■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참여 신 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수집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		<u></u>
	2020 년	월	일

성명 : (서명/인) ※대표자서명

사업비 산정 기준

1.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

비목	세부내역	산정 및 정산 기준	증빙방법	
인건비	내부인건비	○수행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의 월 급여 및 4대 보험료 (일용직의 경우,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) ○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 에 따라 계상 ※ 참여율 인정기준 - 수행책임자 : 당해 사업과제에 50% 이상 (대학(교)의 경우 20% 이상) -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, 참여율이 타 사 업 포함 총 100%를 초과할 수 없음	①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(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)	
		- 대표이사의 참여율 50% 이하 - 대표이사가 과제수행책임자여도 50% 초과 불가 ※ 직급별 계상기준 · 지원 선정 확정 후, 참여 인력에 대한 직전 1년의 급여대 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 1년 급여 대비 20% 이상 증액 불가 · 증빙 불가 시 첨부의 직급별 급여기준 기준표 사용으로 직 급에 대한 증빙 제출 필수	② 참여인력 경력 증명 (건경보험자격득실 확인서등)	
	외부인건비	○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○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- 직급별 계상기준 : 내부인건비 기준과 동일 · 수행기관이 학교 혹은 내부 인건비 기준이 없는 경우 2.직급 별 계상기준 및 단가, 3. 석박사의 전용 단가 준용	① 외부인력 활용계획 품의서 ②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이체내역 (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)	
직접비	재료비 (기자재 및 시설렌트비)	○시약·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, 전산처리 및 관리비 ○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와 부수기자재, 시설의 임 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본 사업에서는 외부기 기 및 시설의 이용(사용료), 임대(렌탈비)를 기본으로함. ※ 사업기간 내 제품개발 관련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비용만 인정	① 계약서(렌탈, 이용계약) ② 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)	

비목	세부내역	산정 및 정산 기준	증빙방법
	제품개발비	ㅇ시제품 · 시작품 · 파일럿 제품 제작경비로 기업에서 자체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함.	① 계약서 ② 계산서 (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)
직접비	수수료	ㅇ <u>과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 수수료 집행</u> - 일반운영비(전기료, 가스료, 임차료) 불인정	② 카드거래명세표 (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)

「 지원금 빛 자부담금 공통불인정 항목]

구분	세목	세부내용	
인건비	내부인건비	-대표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와 특수관계인(공동사업자, 투자자, 등)고용 불가 -대표 본인의 인건비 및 4대보험료	
	외부인건비	-대표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와 특수관계인(공동사업자, 투자자, 등)과의 외주용역 및 구매계약	
		-식비, 음료:간식비, 보험(재해/보장), 가산세 및 이자 등	
기타		-차량임대비, 주유비 등	
		-의류, 완구류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품	
		-회의비, 교통비, 여비(출장경비), 숙박비 등	

- ※ 직접비 집행 시 우선적으로 사업비 계좌를 통해 발급한 체크카드를 사용, 세금계산서 발행 건은 이체 가능. 단,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하며 영수증 처리 필
- * 본 사업은 도비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, <u>정산서류 작성 시 부가세를 제외</u> 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
- ※ 과제 선정 및 확정 절차를 통해 신청 예산의 규모와 항목별 타당성 검토(협력기업, 진흥원의 예산기준을 통한 항목별 심의) 후, 과제수행계획서(최종 사업계획서)를 통해 최종 집행예산의 구성 확정 예정
- ※ 전체사업비 중 직접비 합계가 <u>60% 이상</u>이 되도록 사업비 산정 권장
- ※ 반드시, 판단이 어렵거나 기준이 불명확 한 경우 집행전 사전 담당자와 협의 후 집행 (임의집행 불인정)

2. 직급별 계상기준 (학술연구용역 2020년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)

구 분	책 임 급	선 임 급	원 급	기 능 급
대 학	부교수 이상	전임강사 이상	대학원 박사과정	
국·공립 연구기관	4급 이상 직원	5급 이상 직원	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	
정부출연 연구기관	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칙급			
기 업 체	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 격 취득 후 5년이상 연구 경력 소유자 전체학의 참들 후 7년 이	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 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	어다하아상의 과정이수자기타 등등 이상의경력소유자	o 책임급, 선임급, 원급 요건에 해 당 되지 않는 자
	이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 상의 연구경력 소유자	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		
적용단가 (50%)	o 3,229,730	o 2,476,514	0 1,655,466	0 1,241,642

^{*} 적용단가는 각 직급별 최대 지급 가능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시 지원금 내에서 지급 불가(자부담 가능)

3. 개발기관이 대학의 경우 석·박사과정의 적용단가

구 분	박사이후	박사과정	석사과정	학사과정
적용 단가 (100%)	2,500,000원	2,500,000원	1,800,000원	1,000,000원

^{*}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되 100%미만 참여시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

4.직접비 세목별 적용단가

세 목	적 용 단 가
2-가. 재료비	ㅇ 재료비 : 실소요금액 또는 계약 단가
(기자재 및 시설렌트비)	ㅇ 기자재 및 시설렌트비 : 이용료 또는 렌탈비 실소요금액
2-나. 수수료	ㅇ 수수료 : 실소요금액 * 지식재산권 출원 수수료에 한해 가능
2-다. 제품개발비	ㅇ 제품개발비 : 실소요금액
(상품제작비)	* 협력기업 지원 외 항목에 한해 가능

[※] 본 사업은 도비 지원에 의한 면세사업이며 부가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, 정산서류 작성 시 부가세를 제 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

<참조 2> 제출문서에서 제외

심 사 기 준

○ 2020 경기공방학교 경기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

구 분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 점
사업계획 (30)	목표의 적정성	● 프로젝트 목표의 적정성	15
	예산의 타당성	• 프로젝트 계획/규모/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	15
발전가능성 (30)	차별성	● 프로젝트의 기존 제품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 정도	15
	발전가능성	• 프로젝트 결과물의 경쟁력 및 발전 가능성	15
추진역량 (30)	보유 역량	• 대표자 및 팀원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분야 기술/경력	15
	실현 가능성	●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및 실현 가능성	15
용복합 (10)	융복합 정도	• 메이커 분야 간 융복합 참신성 및 난이도	
합계			
가산점	경기공방학교 기 참여자	● 18`, 19` 경기공방학교 기 참여자	3